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099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.

발 의 자:김정재・김소희・박충권

김기현 • 권영진 • 윤영석

유영하 · 김승수 · 고동진

엄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그간 정부 주도의 국토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집 중 및 지방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주체인 민간 기업 주도로 지방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이 직접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고, 투자하고,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업도시를 추진중임.

기업도시는 지역 일자리뿐만 아니라,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,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등 정주여건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방을 위한 공공성을 갖는 사업으로, 과거 기업도시 개발 당시 지원되었던 조세특례 사항을 새롭게 추진하는 기업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.

이에 내국법인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전담기업에게 기업도시개발 사업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 익에 대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(안 제85조의3)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5조의3제1항제1호 중 "2015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연 행	개 성 안		
제85조의3(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	제85조의3(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		
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	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		
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	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		
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례) ①		
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			
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		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		
손금에 산입하여 그 내국법인이			
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			
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			
있다.			
1. 내국법인이 「기업도시개발	1		
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			
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		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(이			
하 이 조에서 "기업도시개발			
사업전담기업"이라 한다)에게			
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안에			
소재하는 토지를 <u>2015년 12월</u>	<u>2027년 12월</u>		
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	31일		
발생하는 양도차익		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